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분	내용
CP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Compliance Program)란, 경쟁 주체인 기업이 경제활동 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프로그램
CP도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 강화 ◆ 법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을 사전에 예방 ◆ 대내외 신인도 제고 ◆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CP의 도입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교육프로그램 ◆ 사전감시체계 ◆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CP운영에 따른 경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1.1 의의

-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자율준수 편람』이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가 작성한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 편람』을 말한다.

1.2 목적

-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1.3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당사』란 『회사명』를 말한다.
- 『계열회사』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당사의 계열사를 말한다.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를 말한다.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 수급사업자를 말한다. 수탁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한다.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을 말한다.

1.4 CP(Compliance Program)란?

- 경쟁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동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1.5 CP의 필요성

▶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① 공정거래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지속적인 발전

▶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
- ②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①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제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①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약관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할부거래법』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전자상거래법』이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한다.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입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운영규정을 정하고, 규정에서 지침에 위임한 사항 및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한 사항 등 세부 운영 지침을 정해야 한다.

3. CP의 8대 구성요소

▶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 기업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 천명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율준수 의지는 회사 내 게시판, 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임직원에서 공유하고,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 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 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프로그램

-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위반 리스크를 제거한다.

▶ 사전감시체계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므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공정 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해야한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회사의 제반 활동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최고경영자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수립하고 집행 할 수 있다.

▶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 CP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 제도

-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 직권조사 면제

CP등급	직권조사 면제	적용대상
AAA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제45조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등
AA	1년 6개월	
A	1년	

※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최근 2년간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CP등급	위반사항 신문 공표	적용대상
AAA	공표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제45조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등
AA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A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 기간 단축	

5. 공정거래 위원회 소개

5.1 정의

-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5.2 주요 기능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대금지급, 물품 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 확보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 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 시정

5.3 조직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인), 비상임위원(4인)
- 조사부서 : 조사관리관, 4개 국/관, 20개 과/팀
- 정책부서 : 사무처장, 4개 국/관, 18개 과/팀

5.4 소관 법령

- 경쟁 정책 : 공정거래법
- 소비자 정책 :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 기업거래 정책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